금융결제원

㊞463-8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, FAX:02-566-6426
(담당자 : 부부장대우 윤철표, ☎ 1577-5500)

문서번호 CMS안전성강화실행전담반-234 2014. 12. 4.

수 신 CMS 이용기관 대표이사

참 조 CMS 담당자

제 목 **CMS 실태점검 실시완료에 따른 이용기관 준수사항 안내**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CMS 이용기관 실태점검 실시 안내」(CMS안전성강화실행전담반-35, '14. 3.19)에 의거 실시한 실태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3. 당원은 지난 8개월간 실시된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CMS 이용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<붙임>과 같이 안내드리니, 동 내용 중 귀 기관에서 준수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만일 이를 조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 또는 CMS 이용약관 위반 등으로 CMS 이용제한 등 귀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CMS 이용기관 준수사항 1부. 끝.

금융결제원 e사업실장 e사업실장 이미하이

(붙임)

CMS 이용기관 준수사항

□ 이용기관은 주소,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, 반드시 **금융결제원에** 해당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 항상 **최신의 정보가 관리**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□ 고객 계좌에서 CMS로 출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**고객으로부터 서면, 인터넷 또는 전화 등**을 이용해서 **출금동의를 받아 보관**하여야 합니다.

- **인터넷**으로 출금동의를 받는 경우, 반드시 신청내용에 대해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**전자서명한 전자문서**이어야 합니다.

※ 금융위원회의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6조 중 관련내용

제6조(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)

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"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를 말한다.
1. 공인전자서명한 전자문서
2.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
   가.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
   나.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
   다.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
   라.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
3. 제37조에 의해 구성된 인증방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서명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서명한 전자문서

- **전화**를 이용하여 출금동의를 받는 경우, **전화녹취 또는 음성응답시스템(ARS)을 이용**하여 동의사실을 확인·보관하여야 합니다.

※ 금융위원회의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6조 중 관련내용

제6조(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)

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.
1. 전화 녹취
2. 음성응답 시스템(Audio Response System : ARS)

□ 출금동의서는 **자물쇠가 있는 서류함 또는 창고** 등에 **안전하게 보관**하여야 하며, 해당 고객의 CMS 출금이 해지된 이후에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
□ 이용기관은 고객으로부터 CMS 출금동의를 받을 때, <u>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금융결제원 앞 제공에 대해 동의</u>를 받아야 합니다.

※ (예시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문구

[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]
- 수집 및 이용목적 :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
- 수집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금융기관명, 계좌번호
- 보유 및 이용기간 :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(해지일) 후 5년까지
-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동의함 □ 동의안함 □

[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]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사단법인 금융결제원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,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
-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금융기관명, 계좌번호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
-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.

동의함 □ 동의안함 □

□ 이용기관은 고객이 출금동의시 타인(부모, 자식, 형제 등) 계좌를 출금계좌로 지정하는 경우, 반드시 해당 <u>계좌 소유주의 동의</u>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.

□ 출금동의서를 통해 어떤 고객이 어느 이용기관에 CMS 출금동의를 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, 출금동의서에 <u>이용기관명</u>을 반드시 <u>기재</u>하여야 합니다.

※ (사례) 이용기관명이 없는 출금동의서

가정통신문에 출금동의서를 같이 인쇄하여 배포한 후 출금동의서만 절취하여 수집.보관하는 일부 학교 중에서, 가정통신문에는 학교명을 인쇄했으나 절취되는 출금동의서에는 학교명을 인쇄하지 않아 출금동의서만으로는 어느 학교에 출금동의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

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출금동의서 표준양식 또는 프로그램업체에서 제공하는 출금동의서 양식을 사용하는 이용기관 중 일부는 이용기관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위치에(오른쪽 그림의 점선 부분) 고객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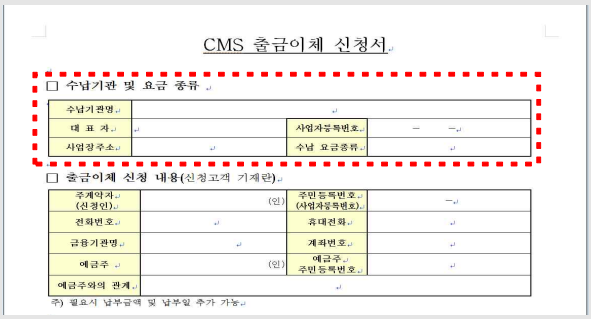
CMS 출금이체 신청서

□ 수납기관 및 요금 종류

수납기관명			
대 표 자		사업자등록번호	– –
사업장주소		수납 요금종류	

□ 출금이체 신청 내용(신청고객 기재란)

주계약자 (신청인)	(인)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–
전화번호		휴대전화	
금융기관명		계좌번호	
예금주	(인)	예금주 주민등록번호	
예금주와의 관계			

주) 필요시 납부금액 및 납부일 추가 가능

□ 이용기관은 수납율 향상 및 고객민원 최소화를 위해 출금이체 전에 SMS 등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<u>출금이체 예정사실을 사전 고지</u>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